**용역 계약서**

용역계약서? 이 단어가 등장하면 일단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좀 긴장해야 됩니다. 청운의 뜻을 품고 스타트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시제품을 만들거나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또는 서비스 페이지나 앱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대로 개발이 안되어서 골치가 썩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표가 금손이거나 팀빌딩이 정말 잘 되어서 내부적으로 이와 같은 각종의 개발 이슈를 잘 해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안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따라서, 스타트업을 시작할 대표님들은 외부에 뭔가를 맡길 때 반드시 용역계약서를 잘 써야 합니다.

**제1조(계약의 목적)**

[ ] (이하 ‘갑’이라고 한다)와 [ ] (이하 ‘을’이라고 한다) 은 ‘을’이 ‘갑’을 위하여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 ]용역 업무를 제공하고 ‘갑’은 ‘을’에게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각 당사자(‘갑’ 과 ‘을’ 을 각 당사자라고 하거나 둘 모두를 칭할 때는 당사자들이라고 한다)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하기 위해서 본 계약을 체결한다.

통상 계약서(합의서, 약정서, 각서 명칭 불문) 제일 처음에는 이 계약서를 체결한 목적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갑돌이가 을순이에게 앱 서비스 개발 용역을 부탁 한다고 하면, 이에 맞게 위 빈칸에는 ‘갑돌이, 을순이, 앱 서비스 개발’ 이라는 단어가 들어 가면 됩니다

**제2조(‘을’의 용역제공 의무)**

1. ‘을’은 ‘갑’에게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였고,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각호와 같다.
   1. ‘을’은 ‘갑’을 위해 [ 인연찾기 ]서비스 어플을 개발하여 주기로 하였다.
   2. ‘을’이 개발할 [ 인연찾기 ]서비스 어플은 [ 인연찾기 ] 라는 서비스로 ‘갑’에 의하여 서비스 될 예정이다.
   3. 위 서비스에는 다음 각 목의 기능이 탑재되어야 한다.
2. 소셜 회원가입 기능(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구글 모두 포함)
3. 프로필 사진등록 기능(사진을 최대 5장까지 업로드하여 프로필을 등록하는 기능)
4. 프로필 설정(성별, 나이, 키, 몸무게 등 개인 프로필을 설정 후 희망하는 사람은 해당 내용을 프로필에 표시할 수 있음)
5. 지도찾기 기능(지도에 현재 연인을 찾는 사람이 표시가 되고, 표시된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
6. 결제 기능(휴대폰, 신용카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무통장 입금 기능)
7. 후기 작성 기능
8. 별점 기능(프로필을 보고 좋아요를 눌러주고, 좋아요가 많으면 상단에 노출되는 기능)
9. 운영자 프로그램
10. 1년 간 유지보수 제공
11.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기타 개발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능
    1. ‘을’은 ‘갑’에게 위 서비스 개발과 관련된 소스코드를 모두 제공하여야 하고, 위 아. 목과 관련하여 [구글 플레이 마켓]과 [앱스토어]에 정상적으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해당 스토어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어 서비스를 개발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이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상표, 서비스표 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12. ‘을’은 위 서비스 개발 업무를 20[ ]년 [ ]월 [ ]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13.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구체적인 용역에 관한 내용은 별도 기획서 또는 별첨 문서로 정할 수 있다.
14. ‘을’은 위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갑’이 중간 검수를 요구할 경우 협의하여 중간 검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용역계약서에서는 어떤 용역을 제공하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추후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면, 용역을 제대로 제공하였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데 그 때 용역 제공의 기준이 되는 것이 계약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법적인 분쟁에 이르러서 계약서 내용이 빈약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용역 내용을 구체적으로 넣어 두어야 합니다. 이 샘플계약서에서는 앱 서비스를 만드는 계약을 예시로 들어 두었습니다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갑’의 용역대금 지급 의무)**

1. ‘갑’은 ‘을’의 용역제공에 맞추어 ‘을’에게 용역비용을 아래 각호의 기준에 맞추어 지급하여야 한다.
   1. 착수금 20[ ]년 [ ]월 [ ]일 금[ ]원
   2. 중도금 20[ ]년 [ ]월 [ ]일 금[ ]원
   3. 잔금 20[ ]년 [ ]월 [ ]일 금[ ]원

통상 용역계약서는 계약금 내지는 착수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중도금, 잔금 순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혹은 중도금 없이 계약금 내지는 착수금을 지급하고, 잔금만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1. 위 제1항의 잔금은’을’이 개발한 서비스에 관하여‘갑’이 최종적으로 검수하여 용역 완료 확인을 한 후에 지급하기로 한다.

잔금의 경우 바로 지급하기보다는 용역 업무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지급하게 되면, 용역업무가 제대로 마무리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4조(비밀유지 의무)**

1.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한 상대방에 관한 정보의 형태와 종류에 관계없이 해당 정보를 비밀로 간주하고, 이 비밀정보를 상대방의 허락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업무 수행에 한 해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한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이 때 상대방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받을 제3자 명단, 제공하는 정보의 명단을 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허락을 받아 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3. ‘갑’과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전달받은 비밀 정보는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상대방의 허락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본 계약의 종료 즉시 해당 정보를 폐기하여 이에 관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보고해 주어야 한다.
4. ‘갑’과 ‘을’은 상대방의 비밀 정보를 상대방의 허락없이 직, 간접적으로 활용하여 이를 통한 수익창출 행위 등은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만약, 허락업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될 경우 해당 수익은 전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비밀유지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계약서에 기본적인 내용만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밀 유지의무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별도 비밀유지계약서 내지는 서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5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 기간은 본 계약일로부터 예정된 용역업무 완료 시점 까지이다.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및 완전한 합의)**

1. ‘갑’과 ‘을’이 기존에 구두로 합의하였던 내용, 기존에 서면으로 합의한 내용에 관해 본 계약서 내용과 다른 부분은 효력이 없고 본 계약서 내용을 당사자간 최종 합의로 한다.
2. ‘갑’과 ‘을’이 본 계약서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서면 합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1. ‘갑’과 ‘을’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상대방에게 발생시“상대방”에게 본 업무협약의 해제 혹은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파산, 회생, 행정규제, 민사, 형사 및 행정적인 규제나 일체의 소송(압류등 집행, 가압류·가처분 등의 보전처분)등으로 인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상대방이 본 계약서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의무 이행에 대한 상대방의 시정조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아래 제8조에 의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제8조(손해배상과 면책)**

1. ‘갑’과 ‘을’은 본 계약서 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을’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본 계약 상 용역업무를 완전히 수행하지 못 하게 되는 경우 ‘을’은 ‘갑’에게 받은 용역비용 전부를 위약벌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스타트업을 할 때 용역 상대방이 제대로 용역업무를 수행하지 못 해서 머리를 앓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정에서 다툼의 소지는 있을 수 있으나 위약벌 규정을 두어 중간에 일을 그만두고, 용역대금만 일부 챙기는 일이 없도록 명시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1. 천재지변 등 당사자들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면책된다.

**제9조(계약상 권리와 의무의 제3자 양도금지)**

‘갑’과 ‘을’은 상대방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효력)**

본 계약은 ‘갑’ 과 ‘을’이 서명날인 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한다.

**제11조(전속관할의 합의)**

본 계약과 관련된 소송의 전속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당사자 사이에서 본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서 원본 2통을 작성하여 당사자들이 각 서명 또는 날인 후 각 당사자가 1부씩 보관한다(서명의 경우는 신분증 사본을 각 첨부하고, 날인의 경우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인감도장으로 날인한다). 또는, 리걸팀톡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갑’과 ‘을’의 서명날인을 위하여 이하 여백

20[ ]. [ ]. [ ].

갑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이사 [ ] (인)

을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이사 [ ] (인)